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
- 나.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 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
- 라.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의3,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2조의2, 제24조~제6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을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이거나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③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4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제출 할”을 “제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로,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심의 안건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한”을 “부서는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심의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척되며”를 “제척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관리위탁

기간”을 “관리위탁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를 “「구미시 건축 조례」 제34조”로 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제1항 중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상태”를 “관리 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무허가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으로, “재산매각 및 대부시”를 “재산 매각 및 대부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 개발사업구역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산보존”을 “재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산소유권상”을 “재산 소유권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결”을 “조사 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당해 재산”으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구미시”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의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중 “예·결산”을 “예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연고권 배제)”를 “(일반재산의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권리주장”을 “권리 주장”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제1호 중 “분양 받”을 “분양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를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특수목적”을 “특수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대부요율”을 “대부료의 요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재산평정가격”을 “재산 평정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를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 이상”을 “50명 이상”으로,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3)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국내부품”을 “국내 부품”으로, “조달비율”을 “조달 비율”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지역안”을 “시 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을 “「소재·부

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을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국내부품”을 “국내 부품”으로, “조달비율”을 “조달 비율”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 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1일평균 고용인원”을 “1일 평균 고용 인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조달비율”을 “조달 비율”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 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33조제2항 중 “시금고”를 “시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5조제1항 중 “최초년도”를 “최초 연도”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부정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부료의 요율

제38조제1항제2호 중 “매각 하는”을 “매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을 “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00제곱미터이하”를 “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계약시에 따”를 “계약 시에 따”로, “계약시에 재산”을 “계약 시에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산업센터용지”를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투자지역내”를 “외국인투자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 유치”를 “외국인투자유치”로, “용지내”를 “용지 내”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면적범위”를 “면적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읍·면지역”을 “읍면지역”으로,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제10호 중 “이용가치”를 “이용 가치”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유임야관리)”를 “(공유임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바지할수”를 “이바지할 수”로 한다.

제43조 중 “활용가능성”을 “활용 가능성”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건폐율이상”을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청사등의 설계)”를 “(청사 등의 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감등 장래수요”를 “증감 등 장래 수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를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방공대피시설”을 “민방공 대피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냉·난방시설”을 “냉난방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을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상”을 “면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를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로, “별표 2 상”을 “별표 2”로 한다.

제48조 중 “시건축조례의”를 “「구미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종합청사부지”를 “종합청사 부지”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관리의무”를 “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훼손방지”를 “훼손 방지”로 하

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제54조의 제목“(관사 관리대장의 비치)”를“(관사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을 “고유 관리 번호와 사용 대상”으로, “비치정리한다”를 “준비·정리한다”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관리의무”를 “관리 의무”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운영관리”를 각각 “운영 관리”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를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물유지 수선비”를 “건물 유지수선비”로, “재산유지 관리비”를 “재산 유지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을 “사용 대상”으로 한다.

제58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등재관리”를 “등재 관리”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중”을 “운영비 중”으로, “관사담당”을 “관사 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사운영비”를 “관사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관사의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제61조 중 “공용임차주택”을 “공용 임차주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인명의”를 “사인 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진반환자”를 “자진 반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5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66조 중 “소유지분”을 각각 “소유 지분”으로 한다.

제68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u>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u></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 ----- <u>재산 소재지 읍면동 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u>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2. <u>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 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 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 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 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 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 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 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 상)로 재직 중이거나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 된 사람

③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 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 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 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⑥ (생략)

제4조의2(회의 등) ① (생략)

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삭 제>

<삭 제>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출할 -----

-----.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
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
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 의결하며 재
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
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장이 ----- 담당
국장-----
-----.

⑤ -----
-----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

⑥ -----
----- 관계 공무원 ---

--.

⑦ ----- 심의 안건 관련 부
서에 자료 제출 -----
-----.
부서는 특별한 -----
-----.

⑧ 심의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
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
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
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 5. (생략)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
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3. 4. (생략)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략)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

----- 제척되며-----

-----.

② ---

----- 해당 위원-----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 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
경 또는 폐지

3.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
한 사항

다.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3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
달하는 토지

3.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
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 5. (생략)

나. -----
관리위탁기간 -----

다.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구미시 건축 조례」 제34조

3.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

----- 1회 이
상 공유재산 실태조사-----
-----.

② -----

----- 각 호 -----
-----.

1. ----- 관리 상태

2. ~ 5. (현행과 같음)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
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
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생략)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6. 무허가 건물 -----
설치 여부

7. (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
----- 공유재산 관리
대장----- 재산 매
각 및 대부 시-----

-----.

1. (현행과 같음)

2. ----- 주택재
개발사업구역 내-----

3. ----- 재산 보존-----

4. (현행과 같음)

5. ----- 재산 소유권상 -----

④ ----- 조사 결과-----

-----.

제16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20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

-----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당해 재산-----

----- 허가 시-----
-----.

②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생략)

<신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
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⑥ (생략)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
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
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
정하는 경우
2.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
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
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부) -----

----- 갖추어 두고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
· 결산, 사업실적 등)

3.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
 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
 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
 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
 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
 야 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예
 결산-----

3. 4.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회-----
 -----.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재산의 대부) -----

 ----- 대부기간 중-----
 ----- 권리 주장-----
 -----.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

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사용권 획득 우
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
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품 또
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
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
·수출 등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
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
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
정하는 경우

2.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다.

1.·2. (생략)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

1.·2. (현행과 같음)

3. -----
----- 대부료의 요율-----

----- 재산 평정가격-----
-----.

④ -- 각호-----
----- 재산 평정가격-----

-----.

1.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4. 시가 -----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
는 경우

5. (생략)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
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
상을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
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
는 때

7. 시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
정을 위하여 매입한 임대 주
거시설을 소속공무원에게 임
대하는 경우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투
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 50명 이상-----

-- 일정 규모-----

7. -----

----- 소속 공무원-----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각 호-----.

1.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2) (생략)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나. 삭제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가. -----

1)·2) (현행과 같음)

3)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

- 국내 부품 -----
- 조달 비율-----

마. ----- 전체 생산량-----

바. -----

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생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 조달 비율-----

-

라. (현행과 같음)

마. -----

시 지역 안-----

-

바. (현행과 같음)

3. -----

-----.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

-

다. -----

- 조달 비율-----

-

라. ----- 전체

생산량-----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사. (생략)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생략)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

마. -----

시 지역 안-----

바.·사. (현행과 같음)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 금고-----

-----.

③ -----

1. ~ 5. (생략)

6. 대부요율

7. ~ 10.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

1. ~ 5. (현행과 같음)

6. 대부료의 요율

7.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매각
하는 -----

3. -----

----- 재개발사업구
역 안-----
----- 재개발사업-----

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
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
지를 매각하는 때

5.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
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
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
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
을 연장하는 때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4. -----

----- 400제곱미터 이하 -----

5.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일정 기간 동안 -----

----- 계약 시에 따 -----
----- 계약 시에 재산 -----

3. (현행과 같음)

4. -----

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
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
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
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
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
상비를 포함한다), 인건비와 투
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지식산업센터 용지-----

----- 산업단지개발
사업 용지-----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분할납부하게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각 호-----

-----.

<단서 신설>

6. ~ 9. (생략)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야 한다.

6. ~ 9. (현행과 같음)

10. -----

----- 이용 가치 -----

제42조(공유임야 관리) -----

----- 이바지 -----
할 수 -----.

제43조(처분의 제한) -----

----- 활용 가능 -----
성 -----
-----.

제46조(청사의 부지) -----

----- . -----

----- 건폐율 이상 -----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영 제9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 기구 · 인력의 증 · 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생략)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 ·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생략)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 증 감 등 장래 수요 -----
2. ----- --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현행과 같음)
4. ----- 민방공 대피시설 -----
5. 냉난방 시설-----
6. (현행과 같음)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

② ----- 신축 시 ----- 면적 기

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 2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생략)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
----- 별표 2-----
-----.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구미시 건축 조례」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종합청사 부지-----
-----.

제53조(사용책임) -----
----- 다
다음 사항-----
----- 관리의무-----
-----.

1. -----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4. (생략)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3.·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관리대장) -----

-----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
----- 준비·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1.·2. (현행과 같음)

3. -----
----- 관
리 의무-----
----- 운영 관리-----

4. ----- 운영 관
리-----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

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생략)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 8. (생략)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3. (생략)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

----- 에어컨 -----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2. 건물 유지수선비-----

-- 재산 유지관리비-----

3. (현행과 같음)

4. 응접세트, 커튼 -----

5. ~ 8.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 각

호-----

1. 사용 대상 -----

2.·3.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

----- 갖추어 두

고 -----

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

----- 등재 관리-----.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영비 중

----- 관사 담당 ---

-----.

1. 관사의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
3. 그 밖에 -----

제61조(준용) ----- 공용 임차주택-----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초과할 -----.

1. --- 각 목-----
--- 대해서-----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
다

가. (생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
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
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
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
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
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
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
----- 사인명의

2. 제1호-----
----- 대해서-----

② -----

----- 2명 -----

③ ----- 자진
반환자-----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
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
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
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
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
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
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
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
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
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8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
용할 수 있다.

④ -----

----- 안된
다.

제65조(합필의 신청) -----

----- 지체 없-----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소유 지분-----

----- 소유 지분 -----
-----.

제68조(준용) -----

----- 대해서-----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

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4.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

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 27. 생략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팀 장	정 세 황
	담 당 자	정 민 주 (480-5072)